

직장주택조합설립 신고필증

신고번호			
조합명		직장명	
대표자		생년월일	
사무소소재지	(전화:)		
조합원수			

「주택법」 제11조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
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
